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788
----------	-------

발의연월일 : 2025. 9. 8.

발의자 : 정준호 · 조계원 · 이연희

임호선 · 채현일 · 문진석

한준호 · 복기왕 · 안태준

양부남 · 이건태 · 김준혁

최혁진 · 염태영 · 강준현

이재정 · 손명수 의원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무료 공영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정기방치 차량에 대해 견인조치를 하고 있지만, 일부 지자체는 견인부서 부재 및 견인대행업체 폐업 등을 사유로 장기방치 차량 견인 조치를 취하는데 한계가 있는 실정임.

특히, 캠핑용자동차 등의 경우 주차공간 침범과 장기 주차, 주차장 무단 점유 등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 실효적인 행정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노상 · 노외 주차장 등 무료 공영주차장에서의 장기 주차를 금지하는 규정을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주차장 이용 편의성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 등).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자동차가 분해·파손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는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고정적으로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 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으로서 주차요금이 징수되지 아니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
2.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부설주차장 중 개방주차장이 아닌 주차장

제8조의2제1항제6호 중 “대통령령으로”를 “1개월(자동차가 분해·파손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차행위 제한 사항 등의 준

수 여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8조의2제2항 및 제3항을”을 “제8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대통령령으로”를 “1개월(자동차가 분해·파손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19조의3제3항제3호 중 “대통령령으로”를 “1개월(자동차가 분해·파손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차행위 제한 사항 등의 준수 여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0조제3항제1호 중 “제6조의3을”을 “제6조의3제1항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6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자동차가 분해·파손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고정적으로 주차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의3(주차장에서의 금지행위) (생 략)</p> <p><u><신 설></u></p>	<p>제6조의3(주차장에서의 금지행위)</p> <p>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p> <p>② <u>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자동차가 분해 · 파손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고정적으로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u>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u>특별시장 · 광역시장,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으로서 주차요금이 징수되지 아니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u></p> <p>2. <u>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부설주차장 중 개방주차장이 아닌 주차장</u></p>

	<p><u>나에 해당하는 주차행위 제한 사항 등의 준수 여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u></p>
제15조(관리방법) ① (생략)	<p>제15조(관리방법) ① (현행과 같음)</p>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u>제8조의2제2항 및 제3항을</u> 준용한다.	<p>② ----- <u>제8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u></p>
1. ~ 3. (생략)	<p>1. ~ 3. (현행과 같음)</p>
4. 주차요금이 징수되지 아니하는 노외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u>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고정적으로 주차하는 경우	<p>4. ----- ----- -----1개월(자동차가 분해·파손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u>대통령령으로-----</u> ----- -----</p>
제19조의3(부설주차장의 관리방법 등) ① · ② (생략)	<p>제19조의3(부설주차장의 관리방법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p>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	<p>③ ----- ----- ----- -----.</p>

<p>다.</p> <p>1. · 2. (생 략)</p> <p>3.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부설주차장 중 개방주차장이 아닌 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u>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고정적으로 주차하는 경우</p>	<p>1. · 2. (현행과 같음)</p> <p>3. ----- ----- ----- ----- <u>1개월(자동차가 분해·파손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5일)</u> 이내의 범위에서 <u>대통령령으로</u> ----- ---</p>
<p>④ (생 략)</p> <p><u><신 설></u></p>	<p>④ (현행과 같음)</p> <p>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차 행위 제한 사항 등의 준수 여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p>
<p>제30조(과태료) ① · ② (생 략)</p> <p>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제30조(과태료)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p>

1. 제6조의3을 위반하여 주차장에서 야영행위, 츄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한 자

<신 설>

2. ~ 4. (생 략)

④ (생 략)

1. 제6조의3제1항을

2. 제6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자동차가 분해·파손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고정적으로 주차한 자

3. ~ 5. (현행 제2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음)

④ (현행과 같음)